

[일련번호 : 2]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업무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 1. 업무개요

♡♡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3항에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0조 [별표 1]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6조 [별표 1]에 의하면 구·동 관련 단체·동아리 활동 및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식에 따라 동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동장은 시설 사용목

적이 자치회관 운영 목적에 맞는지 판단하여 사용 승인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이용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동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이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구 세입처리를 최소 18일에서 최대 31일 지연하여 처리하였으며, 남도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서울강서초 아버지회의 시설사용 신청에 대하여 구·동 관련 단체·동아리 활동 및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를 총 6건 감면해주는 등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금 처리 등 부적정 내역

연번	사용자명	신청일	사용기간	사용료	지적사항
1		23.1.9.		0원	근거없이 사용료 감면 처리
2		24.2.23.		0원	근거없이 사용료 감면 처리
3		24.3.26.		5,000	2024.5.12. 세입처리 세입처리 지연(31일)
4		24.6.7.		0원	근거없이 사용료 감면 처리
5		신청서 없음		0원	근거없이 사용료 감면 처리
6		24.7.1.		0원	근거없이 사용료 감면 처리
7		24.10.10 .		0원	근거없이 사용료 감면 처리 자치회관 시설 사용대장 미기재
8		24.11.26 .		7,000	2024.12.24.세입처리 세입처리 지연(18일)
9		24.8.9. 외		0원	자치회관 시설 사용대장 미기재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